

주민세

○주민세란

전년의 소득에 대해서 도도부현시구정촌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관할 시구정촌에서 과세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그해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개월로 분할된 주민세액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특별징수).

사업소득자나 매월 급여에서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람은 시구정촌 사무소로부터 납입통지서가 도착하므로 6월, 8월, 10월, 이듬해 1월의 4회로 나누어 납세합니다(보통징수).

또한 특별징수로 주민세를 납부하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가 미납 주민세 전액을 급여나 퇴직금에서 제하고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방법(일괄징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본국과 일본에서의 2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를 당하거나 병이나 실업 등으로 납세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 유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에 이사하는 경우에도, 1월 1일 현재 니시노미야시에 살고 있으면, 그 해는 주민세를 니시노미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 경우 출국 전에 일본 거주자 중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관리인)을 정하고 거주 중인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세가 급여 공제였던 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또 납부서를 미리 인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시민세과 0798-35-3214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재류자격 변경이나 보육원에 아이를 보낼 때, 공영주택에 입주할 때 등,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시청 세무관리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낸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 분은 시청 세무관리과에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세무관리과 0798-35-3251

○체납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연체금이 붙습니다.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재산의 차압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납세과 0798-35-3238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